

제327회 임시회  
2014. 2. 18.(화)

# 심 사 보 고 서

-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 
의견제시의 건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4. 2. 18.(화)
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2월 18일

-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질의답변, 의견제시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진천·음성 혁신도시 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·상업·공공청사·공  
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 
불합리

○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 
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을  
요청하여,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건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대상지역 (교환)

| 구분 | 편입되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| 편입받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진천 |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,176㎡ |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,176㎡ | 조정 후 양 군 면적변동 없음 |
| 음성 |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,176㎡ |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,176㎡     |                  |

- 관련기관 의견

< 진천군 >

|      | 의견   |
|------|--|
| 진천군수 |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생활권 일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   |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진행지역으로 입주주민이 없으며, 개발지역인 덕산면 주민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없음 |
| 군의회  |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             |

< 음성군 >

|      | 의견   |
|------|--|
| 음성군수 | 주민생활권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도시 계획시설 관리와 이전 공공기관을 고려, 경계변경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   |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진행지역으로 실제 거주 주민이 없어 인근 주민(맹동면)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없음 |
| 군의회  |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               |

〈 충청북도 의견 〉

-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하고 양 군의회가 동의한 사항
- 이중 공부 등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본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,
  - 진천·음성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하며,
  -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기관, 의회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음
- 본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채택 의견 : “이견없음” (별첨 의견서 참조)

6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서
-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

##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서

충청북도의회는 2014년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접수된 「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」에 대하여 진천군·음성군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방안을 살펴 본 결과,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.

### □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 : 이견없음

- 진천·음성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함.
- 각 군의 행정기관, 의회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추진되었고, 그 결과 반대 의견이 없었음.
- 이에, 충청북도의회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이라 판단되어, 「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」에 대하여 “이견없음”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.

# 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616호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4년 2월 14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진천·음성 혁신도시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·상업·공공청사·공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
-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 요청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

※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

## 2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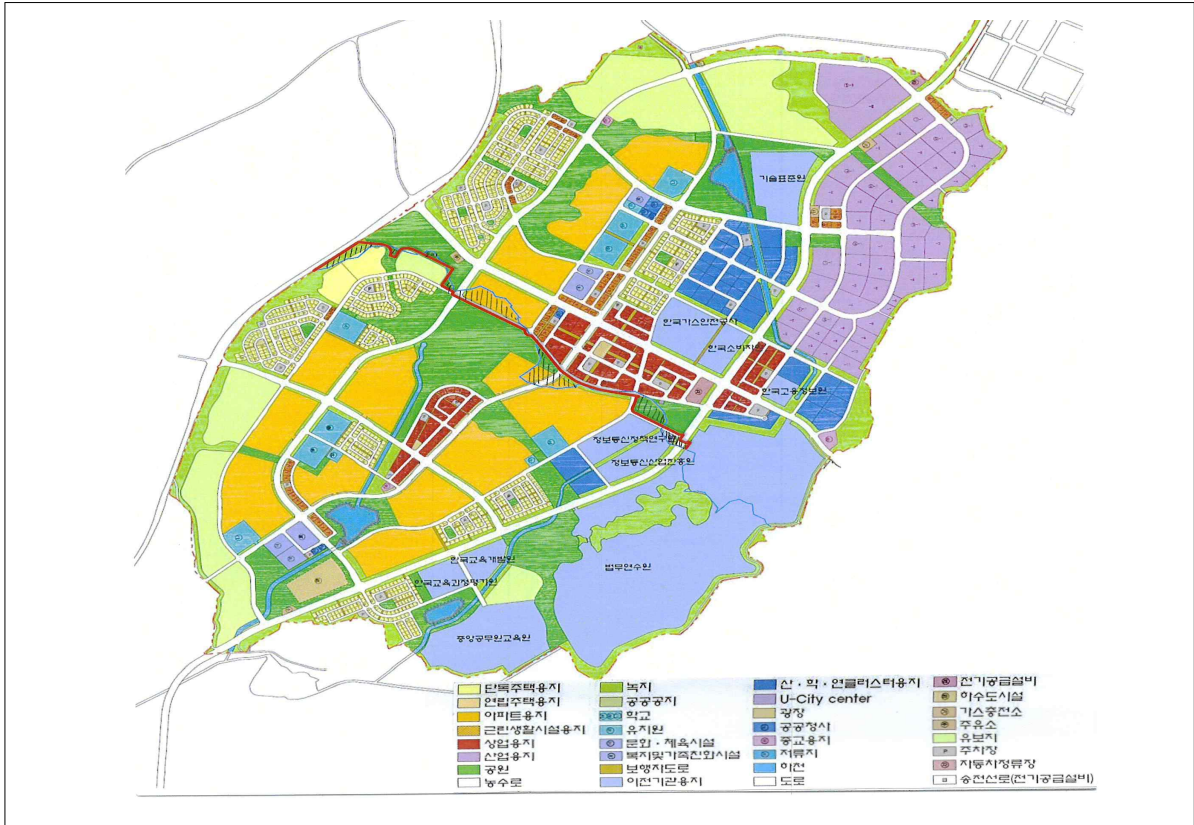
※ <추진절차> 기본계획 수립→시군의회 의견수렴→시도의회 의견수렴→시도지사 건의  
→검토 및 대통령령안작성(안행부)→국무회의 상정→재가 및 공포

## 3. 주요내용

- 대상지역 (교환)

| 구분 | 편입되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| 편입받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진천 |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<br>66필지 40,176㎡ |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<br>69필지 40,176㎡ | 조정 후<br>양군<br>면적변동<br>없음 |
| 음성 |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<br>69필지 40,176㎡ | 덕산면 두촌리 등<br>66필지 40,176㎡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○ 위치도



## 4. 관련기관 의견

### < 진천군 >

#### 가. 행정기관

| 구 분  | 기 관 의 견  |
|------|--|
| 진천군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생활권 일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</li> </ul> |
| 덕산면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 필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나. 주 민

-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진행지역으로 입주 주민이 없으며, 개발지역인 덕산면 주민 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없음



#### 다. 군 의회

-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

#### < 음성군 >

##### 가. 행정기관

| 구 분  | 기 관 의 견  |
|------|--|
| 음성군수 | • 주민생활권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도시 계획시설 관리와 이전 공공기관을 고려, 경계변경 필요           |
| 맹동면장 | • 주민의견 수렴결과 경계조정을 반대하는 주민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 |

#### 나. 주 민

-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진행지역으로 실 거주 주민이 없어 인근 주민(맹동면) 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없음

#### 다. 군 의회

- 혁신도시 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

#### 5. 경계변경에 대한 道 의견

-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하고 양 군의회가 동의한 사항
- 이중 공부 등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함

#### 6.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

- 혁신도시 내 진천-음성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 의회 의견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"지방의회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2조(관계 지방의회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"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"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